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10510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허선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57,161원 및 그 중 225,498,860원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2021. 7. 26.까지는 연 7.04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1억 3,000만 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변동이율로, 대출만기일을 2021. 4.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개명 전 D, 2021. 6. 3. 피고로 개명하였다)는 위 대출에 대하여 한도액을 14억 6,9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9. 1. 9.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7. 12.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911,543,911원을 배분받아 변제충당하여 2021. 7. 2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이 426,257,161원(= 원금 225,498,86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758,301원)이 남게 되었다.

다. E의 처제 F은 2016. 8. 17.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3. 6. 사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3. 6.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 3. 6.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잔존 대출원리금 426,257,161원 및 그 중 원금 225,498,860원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원고의 2021.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7. 2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7.04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E은 C의 실운영자로서 제주도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C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E의 처제 F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E은 위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하여 2015년경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사장이 C의 2015년경의 위 대출에 관하여 E의 지인인 G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여, G이 E에게 “본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 채권관리를 해야 잘 될 것 같다. 대표이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피고가 대표이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17. 3. 6.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4. 9.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면서 피고가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C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원고 측 직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H은 피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인으로 해 두는 것이니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측 직원이 피고에게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니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도록 허락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거나 혹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자신을 채무자로 보지 않고 명의차용인을 채무자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이 그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오로지 형식상으로만 그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5320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에 원고 측 직원들과 업무적인 관계로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된 각 증거, 증인 I, J, E,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하에 오로지 형식상으로만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다는 합의가 성립함으로써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G이 원고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어 2017. 3.경 원고의 이사장이 G에게 C의 대표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C의 대표자 사내이사를 종전의 F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C의 대표자 변경 내용에 관하여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조합에서 증인에게 그렇게(대표이사 변경 요청을 말함) 이야기했나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피고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좀 도와주면 되겠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가 누구한테 뭐라고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A조합에서 피고에게 재대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대표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기에 제가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니가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G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참조. 한편 G, E, J의 대질신문 녹취서 5, 6면의 G의 증언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다). 즉 G은 2017. 3.경 피고로부터 대표자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전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이사장으로부터 C의 대표자 변경 내지 피고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표자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E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G 회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본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 채권관리를 해야 잘 될 것 같다. 대표이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피고가 대표이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E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그러나 금융기관인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관리'를 이유로 대출채무 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C는 2015년경 원고로부터 15억 원의 PF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은 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은 일종의 대환대출인 것으로 보인다(H의 증인신문 녹취서 6, 7, 10, 11면). G은 일자불상경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본대출인 이 사건 대출을 요청하였는데, H은 G에게 'C가 연체 중이고 경영상태가 어려우니 대표자는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H의 증인신문 녹취서 6, 10면), 피고는 그 후 H에게 자신이 C의 대표이사라고 연락하여(H의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H은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서류를 작성받으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고지하였고, 피고에게 "이렇게 큰 금액 대출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으며, 이에 피고는 "G 회장님 믿고 하는 거다. 괜찮다. 사고 안 날 거다"라고 말하였다(H의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⑤ 원고는 기존 대출을 이 사건 대출로 전환하면서 C의 연체 및 기존 대표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F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내부 신용평가를 거쳐 C의 변경된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경위를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체 등 대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지 않을 의사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⑥ 피고는, 자신은 C에게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 측 직원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실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회사인 C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이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명의대여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오로지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또는 E, G와 사이에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따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즉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는 명의차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명의대여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